

2015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기 획 재 정 부

I. 예산편성 기본 방향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공공기관 정상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
 - ◇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경기활성화에 기여
 -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1] 공공기관 정상화의 제도화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구분회계 시범사업을 충실히 이행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집행점검, 사업평가 등 사업추진단계별 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하고 유사·중복사업 등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 출자회사 신설시 설립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립 이후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등의 취지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 정상화 계획 등으로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증가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한다.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를 통해 부채, 방만경영 및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②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

-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 부채 초과 감축 및 방만 경영 감축 재원 등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에 따른 절감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 공공기관의 자체자금 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 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에 노력

-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인사적체·신규채용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호봉제적 요소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고 비정규직 고용여건 개선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한다.
- 지역인재, 고졸자,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형평적 채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II.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① 인 건 비

(1) 총인건비¹⁾

□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²⁾의 3.8%이내³⁾에서 증액하여 편성한다.

- 다만, 2013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 임금⁴⁾이 해당 산업 평균⁵⁾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60%⁶⁾이하인 기관은 5.3%이내, 해당 산업 평균의 90%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⁷⁾이하인 기관은 4.8%이내, 해당 산업 평균의 110%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120%⁸⁾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2.8%이내에서 증액 편성한다.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운영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차등 인상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정원외직원 제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2)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액에서 정상화 계획 등으로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 금액을 제외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른 임원 인건비, 국가재정법 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자산운용전담부서의 자산운용평가성과급, 의사직 운영기관의 진료성과급, 직원 경영실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른 연구수당,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이주수당, 시간선택제 일자리에비비,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을 산정시 제외한다.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4) 총인건비 집행액(공운법 제48조에 의한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을 연간 근무 인원(무급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일할 계산한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금액, 다만, 2015년 중 총인건비 인상률(2.8~5.3% 중 기관별로 적용되는 총인건비 인상률) 이외에 베이스 조정이 있는 기관은 동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

5)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4.4월 발표)를 바탕으로 300인 이상·정규직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를 연평균으로 환산 활용

6) 4,000만원 7) 4,500만원 8) 7,800만원

- 한편, 2014년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2014년도 총인건비 예산 이내에서 편성한다.
- 총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2014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및 인상률을 별도로 관리한다.
 -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총인건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등⁹⁾에 포함되었던 무기계약직(전환전 비정규직 포함) 인건비는 그만큼 감액하여 계상한다.
 - 경영실적 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 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
- 관계기관과 협의된 2015년도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정-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 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은 예비비에 계상한다.
- 상임 임원의 인건비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2)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한 수당 등을 통폐합 하는 등 임금 체계를 단순화해 나간다.

9) 사업비, 잡급 등에 포함된 비용으로, 사업비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에 한하며 일시적 수탁사업 등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임금체계 개편으로 평균임금,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기준월봉 등이 높아져서는 아니된다.
-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개인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서는 안되며,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인상 또는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다.
-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할증률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연차수당은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
- 임원 및 1·2급 등 상위직 관리자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주직원에 대한 이주수당¹⁰⁾은 정원내 직원(무기계약직 포함)은 인건비, 직제상 정원외의 직원은 '잡급'에 편성한다.
 - 1인당 이주수당은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지방이전 이후 2년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주수당은 연간 지급한도 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이주직원에 대한 이주수당

(3)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한다.
- 다만,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의 경우 제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한다.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은 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

(4) 경영평가 성과급¹¹⁾ 및 내부평가급¹²⁾

- 경영평가 성과급은 예비비에 계상하되,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종전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의 300% 이내로 편성한다.
- 상임 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11)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12)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이외에 내부평가 상여금, 생산장려금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해 업적·성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2012년도부터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에서 환원한 기준인건비 전환금*을 포함한 금액

*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 종전 정부투자기관은 월 기본급의 200%

- 공공기관 지정 또는 유형 변경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는 기관은 자체수입 증대, 경상경비 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여유재원 등을 통해 경영평가 성과급 재원을 마련한다.
- 내부평가급은 기본급이 아닌 '내부평가급' 비목에 별도로 계상하며, 성과급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임금피크제¹³⁾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은 근로자의 정년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¹⁴⁾를 적용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기관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¹⁵⁾를 적용하여야 한다.
- 임금지급률과 임금조정기간 등 임금피크제의 세부내용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 하위직 정년을 상위직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경우, 상위직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상위직의 임금지급률을 하위직의 임금지급률보다 낮게 설계할 수 있다.

13)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존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 정원¹⁶⁾을 인정받아 신규채용을 할 수 있으며, 별도 정원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발생한 절감재원으로 충당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년연장자의 능력과 경험이 해당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별도 직무를 개발하고 해당 직무에 합당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정년연장자를 별도 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다.

(6) 기타

- 직제상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외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잡급'에 계상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계상하되, 다른 비목에 계상 할 수 없다.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되, 연봉제가 임금 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 대상직위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액을 차등 결정한다.
 - 등급의 수, 등급별 연봉액, 성과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다만, 간부직에 대한 연봉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2010.6.30. 시행)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6)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신규채용으로 인정받은 인원 또는 정년연장자 중 별도 직군으로 인정받은 인원을 말한다.

-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의 예산편성 및 지급시의 기준년도는 2014년도로 하며, 기본연봉, 월 기본급, 기준월봉 산출은 [붙임1]을 따른다.

2 경 비

(1) 경상경비

- 경상경비¹⁷⁾는 2014년도 경상경비 예산액¹⁸⁾의 2%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 다만, 2013년도 경영평가 결과 S등급 기관은 1%p 증액, A등급 기관은 0.5%p 증액, D등급 기관은 0.5%p 삭감, E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한다.
 - 법정경비 발생, 인력증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2013.12월) 등의 취지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통념상 허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17)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말한다.

18) 2014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에서 정상화 계획 등으로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 금액을 제외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복리후생 항목을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폐지하거나 감액한 경우, 폐지항목을 대체하는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거나, 감축된 항목의 복리후생비를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복리후생비¹⁹⁾는 급여성 복리후생비²⁰⁾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감안하여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
 - 예산에서 장학금을 편성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부지침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의무교육대상 학교의 학비, 방과후 교육비 및 자녀 영어캠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9) '복리후생비'는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20)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한다.

- 주택자금, 학자금, 선택적복지 등의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주택구입·임차관련 이자비용을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용자사업을 예산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은 예외로 한다.
 -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선택적 복지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되, 의료비 통합 명목으로 선택적 복지비를 과도하게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의료비지원 예산 편성 시, 틀니 및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등 과도하게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는 기존 직원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다.
 - 기간제·시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예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16.)」 중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3) 업무추진비

- 2015년도 업무추진비²¹⁾(접대비²²⁾포함)는 2014년 예산액 이내에서 편성한다.
 -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한다.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 추진(업무협약,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²³⁾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 1인당 기금누적액 | 출연율 기준 |
|----------------------|-------------------|
| 500만원 이하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
|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
|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
| 1,500만원 초과 ~ 2,500만원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
| 2,500만원 초과 |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

21)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약,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22)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
 23)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정부지원액 및 영업외 이익(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과 미실현손익(평가손익, 환산손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손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한다.

(5) 기타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이 강화되도록 노력한다.
-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2008.4.10 시행)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한다.
-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은 경비에 편성한다.
 - 직원(정원외의 직원 포함) 1인당 이사비용은 화물물량 기준으로 7.5톤을 상한으로 하되, 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 사다리차 이용비용도 지원할 수 있으며, 화물물량의 이사비용 지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사업비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

-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 부채 초과 감축 및 방만 경영 감축 재원 등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 등에 따른 절감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통한 투자 재원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 기관별 경영목표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 예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비핵심사업·예산낭비요소 발굴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사업계획 및 투자 방향, 재무전망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예산편성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제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규모 등을 적절히 반영한다.
-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전담팀 운영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수행한다.

▪ 다음 각 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3. 법률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 동수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 중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²⁴⁾가 사업단계²⁵⁾별로 이전단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4) 예비타당성조사시 실제 사업비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지만 평가목적상 총사업비로 추정된 기회비용 등(예: 소유 토지 보상액)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판단시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공사입찰 및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 및 계약 금액을 변경된 총사업비로 본다.

25) 사업단계는 설계단계, 공사단계로 구분하며 설계 또는 공사단계를 거치지 않는 투자사업의 경우, 30% 이상 투자확대 방침을 정한 시기를 사업단계로 본다.

- 타당성재조사는 국가재정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 타당성재조사시 사전에 조사기관, 총사업비 증가요인 등에 관한 조사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와 그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이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각 기관이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기관의 핵심역량 분야와 관련한 사업에 진출한다.
 - 해외에서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내외 공모 등을 통한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 해외 시장분석과 마케팅 등에 정통한 해외전문 직위의 설정 및 보직관리 등 운영을 강화하고, 동종 국내외 우수 기업 벤치마킹을 통해 내부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 각 기관 내에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별 투자 타당성 및 국가·환율·금리 위험 등에 따른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되 재무·법률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해당 사업부서가 아닌 재무·감사부서 등에서 참여하여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 해외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사업은 국내사업 부문과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예산, 결산)한다.
 - 해외사업 구분계리 범위 내에서 사업별 투자비, 타당성 조사비 (Feasibility Study) 등에 있어서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는 해외사업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감안하여 해외사업 예산의 일정범위 내에서 예산상 총액계상 할 수 있다.
 - 내부 유보 기준을 마련하여 해외사업에서 발생된 이익 중 일부를 내부 유보하여 해외 사업의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소비·투자 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 안전사회 구현, 취약계층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국가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투자를 확대한다.

4] 자금 및 기타 예산

- 외부 차입금 축소,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채무보증 축소, 비업무용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반영된 규모 내에서 추진하되, 과도한 외부차입 방지·금융비용 최소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 공사채 총량제 적용 대상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공사채 총량규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공사채 총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기관의 자체자금 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투자 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이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내유보를 최소화하고 사내유보금은 목적사업 수행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환율, 유가, 금리변동, 커뮤니케이션 위기, 재난 등 다양한 위협요인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강화한다.
 - 위기관리는 '공공기관 등의 환위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추진하되, 각 공공기관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예산 편성기준을 따른다.

5 예 비 비

-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반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추가경비(급식비, 교통비 등)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비비에 편성하여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 일반예비비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계상하며, 인건비 또는 보수 보전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인력증원 및 정-현원차 봉급예비비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비비, 통상임금 예비비, 성과급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매년 일상적·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는 일반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정소요를 편성하여야 한다.
- 예비비 항목이 없는 기금관리기관은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시간선택제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 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내역으로 관리한다.

Ⅲ. 행정사항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본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2015년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송부하고,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한다.
- 또한,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송부한다.
- 이사회의 심의·의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주무부처 및 감사원에 보고한다.
- 「2015년도 수입·지출 계획서」는 [붙임2]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입·지출 계획서 작성방안」에 따라 작성하되, 원칙적으로 기관 홈페이지 수입·지출현황 항목에 첨부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이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부채, 방만경영 및 경영정보를 충실히 공개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예산의 편성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2015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14. 12. 23>

이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기본연봉, 월 기본급, 기준월봉 등 산정 방식

- 기본연봉은 [표]에서의 기본연봉을 말하며, 월 기본급은 호봉제 적용자는 [표]의 기본급여의 1/12을, 연봉제 적용자는 [표]의 기본연봉([표]의 주 1에 의한 수당 등 제외)의 1/12을 말한다.
- 기준월봉은 [표]의 “인건비”에 따라 산출된 연간보수의 1/12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

| | 구분 | 호봉제 적용자 | 연봉제 적용자 |
|--------------------|----------------------------|---|--------------------|
| 기준월봉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 | ① 기본급여 | 기본급, 본봉, 통상임금 | 기본연봉 ¹⁾ |
| | ② 통상적 수당 ²⁾ | 직무수당, 직책수당, 책임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 - |
| | ③ 상여금성 복리후생비 ³⁾ |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 - |
| | ④ 고정상여금 ⁴⁾ | 상여수당, 기본상여금,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
| 기타 | ⑤ 기타수당 ²⁾ | 가족수당, 통근수당, 연월차수당, 유급휴가수당, 주택수당, 중식수당 등 | - |
| | ⑥ 기타 복리후생비 | 자녀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체육행사비 등 | - |
| | ⑦ 초과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 |
| | ⑧ 성과상여금 ⁴⁾ | 경영성과배분금, 포상금, 성과금, 생산장려금 등 | 성과연봉 |
| 법정 부담금 | ⑨ 4대보험 부담금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좌동 |
| | ⑩ 퇴직급여 총당금 | 퇴직급여총당금 | 좌동 |

- 주 1) 연봉제 적용자에게 통상적 수당, 고정급적 복리후생비, 또는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함
- 주 2) 통상적 수당과 기타수당의 구분은 ‘노동부 임금구조통계조사 및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내용을 준용
- 주 3) 상여금성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실질적인 상여금 성격을 갖는 보수를 말함
- 주 4) 고정상여금은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하며, 성과상여금은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임(성과금, 포상금 등)

[붙임 2]

예산서 부속서류

2015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서

○ ○ ○ ○ 회계
(○○계정 · ○○계정)

○ ○ ○ ○ (기관명)

본 자료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작성되는 수지예산서(자금계획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손익 뿐만 아니라 출자금, 차입금 등 포함)

I. 2015년도 수입·지출계획(안) 개요

1. 수입·지출계획 개요

가. 수입계획

□

○

* 자체수입, 정부지원, 차입금 등 주요 수입재원의 내역 및 특징을 간략히 기술

나. 지출계획

□

○

*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 지출항목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기술
(15년도 중점추진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다. 수입·지출 총괄표

| 구 분 | 수입 | | | | | | | | | | | | | | |
|----------|-------------|-------------|-------------|------------------|-------------------|----------------------|------------------|------------------|-------------------|------------|-----------|---------|---------|------------------|------------------|
| | 정부지원수입 | | | | | | | | | 기타 사업수입 | 부* 대수입 | 출자 금 | 차입 금 | 기타 (전달 배당) | 수 입 합 계 |
| | 정부직접지원 | | | | | 정부간접지원 (고유목적사업수입) | | | | | | | | | |
| | 출 연 금 | 보 조 금 | 부 담 금 | 이 전 수 입 | 부* 대 수 입 | 사 업 수 입 | 위 탁 수 입 | 독 점 수 입 | 부* 대 수 입 | | | | | | |
| <고유계정> | | | | | | | | | | | | | | | |
| 1.00사업계정 | | | | | | | | | | | | | | | |
| 2.△△사업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기금계정> | | | | | | | | | | | | | | | |
| 1.00기금계정 | | | | | | | | | | | | | | | |
| 2.△△기금계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부대수입의 합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호의 사업외수입액과

라. 정부 순지원(재정지원 등) 수입 계획표

(단위 :백만원)

| 구분 | 출연금 | 출자금 | 보조금 | 부담금 | 이전수입 | 위탁수입 | 기타수입 | 소계 | 계 |
|----------|-----|-----|-----|-----|------|------|------|----|---|
| <고유계정> | | | | | | | | | |
| ○ ○○사업계정 | | | | | | | | | |
| 1.기획재정부 | | | | | | | | | |
| 2.국토해양부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정 | | | | | | | | | |
| 1.기획재정부 | | | | | | | | | |
| 2.국토해양부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정 | | | | | | | | | |
| 1.기획재정부 | | | | | | | | | |
| 2.국토해양부 | | | | | | | | | |
| : | | | | | | | | | |
| <기금계정> | | | | | | | | | |
| ○ ○○기금계정 | | | | | | | | | |
| 1.기획재정부 | | | | | | | | | |
| 2.국토해양부 | | | | | | | | | |
| : | | | | | | | | | |
| ○ ○○기금계정 | | | | | | | | | |
| 1.기획재정부 | | | | | | | | | |
| 2.국토해양부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마. 공공기관 유형분류에 따른 자체수입 계획표

(단위 :백만원)

| 구분 | 사업수입 | | | 위탁수입 | | | 독점수입 | | | 기타사업수입 | | | 사업외수입 | | | 자체수입액 합계 |
|----------|----------|-------------|-----------------------|----------|-------------|-----------------------|----------|-------------|-----------------------|----------|-------------|-----------------------|----------|-------------|-----------------------|-------------|
| | 수입 총액 | 가 중 치 | 자 체 수 입 액 | |
| <고유계정> | | | | | | | | | | | | | | | | |
| ○ ○○사업계정 | | | | | | | | | | | | | | | | |
| 1.△△△ 사업 | | | | | | | | | | | | | | | | |
| 2.☆☆☆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정 | | | | | | | | | | | | | | | | |
| 1.△△△ 사업 | | | | | | | | | | | | | | | | |
| 2.☆☆☆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정 | | | | | | | | | | | | | | | | |
| 1.△△△ 사업 | | | | | | | | | | | | | | | | |
| 2.☆☆☆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금계정> | | | | | | | | | | | | | | | | |
| ○ ○○기금계정 | | | | | | | | | | | | | | | | |
| 1.△△△ 사업 | | | | | | | | | | | | | | | | |
| 2.☆☆☆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금계정 | | | | | | | | | | | | | | | | |
| 1.△△△ 사업 | | | | | | | | | | | | | | | | |
| 2.☆☆☆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수입별 가중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강제성·독점성에 따른 산정 요율을 의미

II. 사업별 수입 · 지출계획(안) 내역

사업별 수입 총괄표

<고 유 계 정>

| 구 분 | 지원 구분 | 소관부처 | 분야 | 부문 | 프로 그램 | 단위 사업 | 금액 | | |
|-----------|-------|-------|-----|-----|-------|-------|---------------|---------------|-----------|
| | | | | | | | 2014년 | 2015년 | 증감 |
| □ 정부지원 | | | | | | | 7,777,777,000 | 7,777,777,000 | 4,444,000 |
| ○ 직접지원 | | | | | | | 2,222,222,000 | 2,222,222,000 | 3,333,000 |
| - 정부출연금 | | | | | | | 11,110,000 | 11,110,000 | 2,222,000 |
| 1. ○○○ 사업 | 순지원 | 기획재정부 | 010 | 014 | 1100 | 1131 | 1,111,000 | 1,111,000 | - |
| 2. △△△ 사업 | 순지원 | 국토해양부 | 140 | 143 | 1300 | 1321 | 1,111,000 | 2,222,000 | 1,111,000 |
| - 정부보조금 | | | | | | | | | |
| 1. ○○○ 사업 | 순지원 | | | | | | | | |
| 2. △△△ 사업 | 기타지원 | | | | | | | | |
| - 부담금 | | | | | | | | | |
| 1. ○○○ 사업 | 순지원 | | | | | | | | |
| 2. △△△ 사업 | 기타지원 | | | | | | | | |
| - 이전수입 | | | | | | | | | |
| 1. ○○○ 사업 | 순지원 | | | | | | | | |
| 2. △△△ 사업 | 기타지원 | | | | | | | | |
| - 부대수입 | | | | | | | | | |
| 1. ○○○ 사업 | 순지원 | | | | | | | | |

| 구분 | 지원 구분 | 소관부처 | 분야 | 부문 | 프로 그램 | 단위 사업 | 금액 | | |
|--------------------|-----------|------|----|----|----------|----------|-------|-------|----|
| | | | | | | | 2014년 | 2015년 | 증감 |
| ○간접지원(고유목적) | | | | | | | | | |
| - 사업수입 | | | | | | | | | |
| | 1. ○○○ 사업 | 기타지원 | | | | | | | |
| - 위탁사업수입 | | | | | | | | | |
| | 1. ○○○ 사업 | 순지원 | | | | | | | |
| | 2. △△△ 사업 | 기타지원 | | | | | | | |
| - 독점수입 | | | | | | | | | |
| | 1. ○○○ 사업 | 기타지원 | | | | | | | |
| - 부대수입 | | | | | | | | | |
| | 1. ○○○ 사업 | 순지원 | | | | | | | |
| □ 기타사업수입 | | | | | | | | | |
| | 1. ○○○ 사업 | 순지원 | | | | | | | |
| | 2. △△△ 사업 | 기타지원 | | | | | | | |
| □ 사업외수입 | | | | | | | | | |
| | 1. ○○○ 사업 | 순지원 | | | | | | | |
| □ 출자금 | | | | | | | | | |
| | 1. ○○○ 사업 | 순지원 | | | | | | | |
| | 2. △△△ 사업 | 기타지원 | | | | | | | |
| □ 차입금 | | | | | | | | | |
| - 사채 발행 | | | | | | | | | |
| - 장·단기 차입금 | | | | | | | | | |
| □ 기타수입 | | | | | | | | | |
| - 전기이월 | | | | | | | | | |
| - 배당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수입 사업 설명서 작성>

1. △△△사업(○○○, ◇◇◇)

* 사업 넘버링은 사업별 수입 작성 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은 직접지원/간접지원/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로 구분

* ◇◇◇은 정부출연금/정부출자금/정부보조금/부담금/이전수입/위탁사업수입/독점수입/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로 구분

사업목적

○

※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 및 목적을 알기 쉽게 간략하게 기술

소관부처

○ 소관부처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기재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

< 연도별 예·결산액 >

(단위:억원)

| 사업 | '11 결산 | '12 결산 | '13 결산 | '14 예산 | '15 예산 |
|----|--------|--------|--------|--------|--------|
| ○ | | | | | |

'15년 예산은 사업별 수입의 해당 예산과 일치하여야 함

세부수입내역

○

* 각 지원금의 세부수입내역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출자금의 경우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경우 해당요율 기재하는 등 각 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반드시 제시함

* 이전수입의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금액 등 이전수입의 근거 제시

【예시1】

(단위 : 백만원)

| 항 목 | 자금조달 세부내역 | 조달규모 |
|-------|-----------------------|-----------|
| 법정부담금 |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을 징수 | 1,595,684 |

- * 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의 경우 근거법령 및 지원근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작성 (단위사업수준까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 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의 경우에도 수입의 출처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출처를 밝힘을 원칙으로 함

【예시2】

(단위 : 백만원)

| 항 목 | 자금조달 세부내역 | 조달규모 |
|-------|--------------|-----------|
| 장기차입금 | ◦에특차입금 | 1,234,567 |
| 단기차입금 | ◦민간차입금(oo은행) | 456,789 |
| 사채 | ◦공사채 발행 | 4,567,890 |

사업별 지출 총괄표

| 사업 | 목 | 세목 | 2014년(A) | 2015년(B) | 증감액(B-A) | |
|-----------------------------|-----|----------|------------|------------|------------|--|
| □ (부문)허브경쟁력 강화 | |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
| 1. (프로그램)환승여객 증대 및 항공네트워크강화 | |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
| (1) (단위사업)글로벌 외항사 지역 허브유치 | | | 0,000,000 | 0,000,000 | 0,000,000 | |
| a. (세부사업)거대항공사 유치용역 | | | 0,000,000 | 0,000,000 | 0,000,000 | |
| | 인건비 |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 |
| | | 기존직원 급여 | 0,000,000 | 0,000,000 | 0,000,000 | - 임원 및 - 직원 급여 - 성과 급여 - 체수당 : |
| | | 무기계약직 급여 | 0,000,000 | 0,000,000 | 0,000,000 | - 직원 급여 - 성과 급여 - 체수당 : |
| | | 퇴직급여 | 0,000,000 | 0,000,000 | 0,000,000 | - 기존직원 - 무기계약 |
| | | 복리후생비 | 0,000,000 | 0,000,000 | 0,000,000 | - 급여성 복 ■ 기존직원 : ■ 무기계약직 - 선택적 복 ■ 기존직원 : ■ 무기계약직 |

| 사업 | 목 | 세목 | 2014년(A) | 2015년(B) | 증감액(B-A) | |
|------------------------------|-------|------------------|-----------|-----------|-----------|------------------|
| | 경상운영비 | | | | | |
| | | 여비교통비 | 0,000,000 | 0,000,000 | 0,000,000 | - 시내여비 - 해외교통 |
| | | ooo | 0,000,000 | 0,000,000 | 0,000,000 | |
| | 직접사업비 | | | | | |
| | 간접사업비 | | | | | |
| | 차입금상환 | | | | | |
| | | 원금상환 이자상환 | | | | |
| | 기타 | | | | | |
| | | 차기이월 배당 기타 | | | | |
| b. 세부사업명 | | | | | | |
| | 사업비 | | | | | |
| <input type="checkbox"/> 부문명 | | | | | | |
| 1. 프로그램명 | | | | | | |
| (1) 단위사업명 | | | | | | |
| a. 세부사업명 | | | | | | |
| | 인건비 | | | | | |
| | 경상운영비 | | | | | |

| 사업 | 목 | 세목 | 2014년(A) | 2015년(B) | 증감액(B-A) | |
|----|-------|------------------|----------|----------|----------|--|
| | 사업비 | | | | | |
| | 차입금상환 | 원금상환 이자상환 | | | | |
| | 기타 | 차기이월 배당 기타 | | | | |

<지출 사업 설명서 작성>

1. △△△사업(경상/비경상, 신규/계속, 국정과제, 녹색성장, R&D여부)

- * 단위사업 넘버링은 총괄표 작성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 단위사업명을 기입하되 '경상/비경상',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국정과제'라고 표기하고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주요 국책사업인 경우도 표시
- * R&D,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명 뒤에 '(R&D), (정보화)'라고 표시

< 연도별 예·결산액 >

< 고유계정 >

(백만원)

| 구 분 | '11 결산 | '12 결산 | '13 결산 | '14 예산(A) | '15 예산(B) | 증 감 | | 연평균 증가율 |
|--------|-----------|-----------|-----------|--------------|--------------|-------|-----|------------|
| | | | | | | (B-A) | % | |
| ○△△△사업 | 15,471 | 16,200 | 16,200 | 16,814 | 20,814 | 4,000 | 0.0 | 0.0 |

* 사업코드 : 073-110-00-010-016-2100-2131

* 담당자 : 기획관리실장(○○○), 경영기획부장(△△△), 사업담당과장(홍길동)

□ 사업목적

※ 단위사업에 포함되는 세부사업 기재 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yy~'yy (ex : ('11) 'yy~'yy → ('15)'yy~'zz) |
| 총사업비 ¹⁾ | ○○억원(○○억원) |
| 사업규모 ²⁾ | |
| 지원조건 ³⁾ | |
| 사업시행주체 | |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13) oo → ('14)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1) 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4년까지 기투자액(계획)을 기재

2)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3)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 근거

- * 관련 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 추진경위

-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 * 건축, 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기타 참고자료